안내정보

보호명령 전달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전자적 통보와 보호명령이 만기되기 전 주어지는 통보

피해자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중 하나는 보호명령이 전달되었을때 입니다. 피해자가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신속한 통보를 받는것은 필수적입니다. 오레곤 개정법(ORS) 107.720 에 의해 현재 통보에 관한 요구사항은, 가정학대 방지법 (FAPA) 관련 사건에 있어서 보안관이 전달 증명 정본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Return of Service"라는 양식을 우편으로 보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가끔 피해자에게 서비스 통보를 지연시킵니다. 오레곤 법 ORS 124.020(8)(a) 와 (b)는 노인과 장애자 학대 방지법(EPPDAPA)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 완성된 신청서와 명령서 접수 후 10 일 안에 피고에게 서류들이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보안관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오레곤 법 ORS 107.720, 124.030, 과 30.866(11)에 따라, FAPA, EPPDAPA 그리고 스토킹 민사 사건에 있어서 보안관이 금지명령 발행에 대한 정보를 오레곤주 경찰의 법 집행 정보 시스템 (OSP LEDS)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몇 작은 지역사회들은 명령서 전달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화 줄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피해자들은 명령서가 전달되었는지 알기 위해 반복하여 보안관 사무실과 법원에 전화하게 되고, 그로인해 법원과 보안관 사무실의 전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FAPA, EPPDAPA 그리고 스토킹 민사 사건에 있어서 보호명령서 전달에 관한 통보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이 통보방식은 기존 절차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달증명 정본을 발송해야하는 절차를 대신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박스는 가정학대 보호명령(FAPAs), 노인과 장애인 학대 방지법(EPPDAPA) 그리고 스토킹 민사사건에 관련된 양식들에 포함된 새로운 정보 박스의 보기 입니다. 만일 신청인이 전자적 통보를 받는것을 택할경우 요구되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신청인에게 알림:

만일 금지명령서가 피고에게 전달 되었을때 그리고 그 명령서가 만기되기 30 일 전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받고싶다면, 아래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요. 이 정보는 금지명령을 발행받은 카운티의 보안관 사무실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 정보는 자발적으로 제공하는것 입니다.—이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요구되는것은 아닙니다. **중요: 노인과 장애인 학대 방지법(EPPDAPA) 그리고 스토킹 민사사건에 있어서, 이 추가 정보가 서류에 나타나게 됩니다: "피고가 이 정보의 사본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_____

본인의 휴대전화 회사(ATT, Verizon, etc.): _____

본인의 이메일 주소: _____

중요*:* 만일 이 정보들이 변경되면, 보안관 사무실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야 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사실:

- 신청자는 새로운 양식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 서비스는 필수가 아니며 선택 입니다.
- 신청자는 보안관 사무실에서 법 집행 정보시스템(LEDS)에 정보를 입력하는데로 통보받게 됩니다.
- 이것은 기존 절차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오레곤 개정법에 의하여 보안관이 피해자에게 명령 전달증명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하는 필요를 대신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 이 보완은 금지명령이 전달되었다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더욱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보안관 사무실에 도움을 주게됩니다.

새로운 보호명령 신청인에게 보내지는 자동 메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메세지(이메일이 제공 되었을 경후):

"당신의 보호명령은 (기관명) 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수신을 확인하지 않는 박스임으로 답장하지 마십시요. 질문이 있으면 (기관명) 에 (기관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요."

신청자 휴대저화로 보내는 문자 메세지:

"당신의 보호명령은 (기관명)에 의하여 전달 되었습니다 "

파일에 있는 각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각 보호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메세지가 보내지게 됨:

- LEDS.법집행 정보 시스템 (LEDS)에 만기일 변경 처리가 입력될때 갱신통보.
- 그리고 효력있는 보호명령이 만기되기 30 일 전 갱신통보.

자주 받는 질문:

질문: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비밀로 유지되나요?

답: FAPA 사건에 있어서 법 집행기관을 제외하고 이정보는 상대방 당사자, 상대방 변호사 또는 공공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EPPDAPA 와 스토킹 민사사건에서는 이정보 (같은 사건들에 있어서 다른 정보들과 같이) 를 피고가 받게되고 공공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만일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금지명령을 발행받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문: 옹호기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 그것은 그 기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그기관으로 부터 기관 이메일을 통보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통보 보완에 관한 질문이나 추가정보가 필요하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요:

Diana Fleming Diana.l.Fleming@doj.state.or.us
Karen Heywood Karen.S.Heywood@doj.state.or.us

양식에 관한 질문이나 추가정보가 필요하면, 금지명령을 신청, 변경, 또는 기존 명령을 갱신하고 있는 관계 법원에 연락하십시요.